

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

1차시 |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



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·기관 소속 학생 신분의 연구자
(전문학사학위과정 · 학사학위과정 · 석사학위과정 · 학석사통합과정 · 박사학위과정 · 석박사통합과정 포함)
- 근로계약을 한 휴학생과 수료 후 연구생 등록을 한 수료생, 학위과정을 마친 후 상위 과정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종전 참여하던 연구개발과제에 계속 참여하는 상위 과정 예비 입학생도 학생연구자로 인정 가능



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체계

- **과제별 관리** 과제별 학생연구자당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책정하여 지급
- **통합관리** 여러 과제 학생인건비 예산을 모아 해당 계정에서 학생인건비 지급할 대상 학생연구자를 선정하고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지급률을 책정하여 지급
(요건에 부합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해 적용 가능)
>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와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로 구분
*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시 학위과정별 최소 지급액(균등지급액)을 설정하므로 학생연구자 간 지급액 편차가 덜 함



학생인건비 계상기준

- 각 기관에서 학위과정별로 정한 '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의 월 (학생)인건비의 상한 금액'
- 기관에서 계상기준을 정할 때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로 동일한 금액을 정해야 하며, 학과, 연구부서,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설정은 불가



학생연구자 지원규정

NTIS

가 (click!)

- 학생연구자의 학업 · 연구보장, 처우 보장,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와 학생인건비 관련 학생연구자와 연구책임자, 연구개발기관 각자의 권리와 의무 확인 가능
- 학생연구자의 연구 활동 중 겪는 불합리한 행태를 줄이고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도록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하고 공개해야 함

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

2차시 |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주요 사항



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

-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전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기관장과 함께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직접 서명 필요
- 연구책임자가 확약 내용 제안 후 학생연구자가 동의하면 서명하여 제출하고 기관장이 확인 및 승인하면 확약 완료



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

- 학생연구자의 업무량(참여 과제 수, 참여 시간, 업무 난이도 등 특성) 고려하여 책정
- 학생인건비 책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만 고려해야 하며 장학금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4단계 BK21사업 장학금 등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낮게 책정하는 것은 불가



학생인건비부당회수 정의

-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책임자, 다른 학생연구자 등 누구든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
 - ▶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


학생인건비부당회수 예시 (1) |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관리 또는 사용

- 재료비, 장비비, 연구실 운영 경비, 워크숍 비용, 학회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인건비를 회수
 - ▶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 등에서 사용해야 함



학생인건비부당회수 예시 (2) |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 없이 학생인건비 일부를 감액 및 회수

- 학생연구자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임의로 학생인건비를 감액하거나 회수
 - ▶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연구책임자가 임의로 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정 불가



학생인건비부당회수 예시 (3) |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지급

- 신규 과제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이유로 늦게 지급
 - ▶ 확약월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,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시 계정 잔액을 활용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필요



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

-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안내된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신고 가능
 - *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혹은 한국연구재단 등 과제 관리 전문기관 신고 센터로도 신고 가능

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

3차시 |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처우 보장



정보 확인

- **과제 참여 내역 확인**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제에 학생연구자 참여 등록 필요하며, 학생연구자 개인의 참여 과제 목록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제공
- **학생인건비 내역 확인** 학생연구자 개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수급 내역 확인 가능
- **과제 예산 규모 확인** 학생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예산 총액 및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 총액 확인 가능



과제 참여 성과 보상

- **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·연구능력성과급**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와 별개로 연구 성과 기여도에 따라 연구수당·연구능력 성과급 수급 가능.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시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,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
- **직무발명보상금** 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발명에 기여한 학생연구자가 등록특허에 발명자로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 간 서면계약 하는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. 관련 규정은 각 기관마다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기관 내 관련 부서에 문의 필요



학생연구자 권익 보호

- 폭언, 폭행, 성추행, 성희롱 등 **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**는 어떠한 경우에도 **엄격히 금지**,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**학생연구자 역시** 각 기관 연구윤리 규정, 인권 보호 규정을 **철저히 준수**해야 함
- 학생연구자는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거부하고 시정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, **문제 해결을 위해 고충상담 및 신고 가능**
-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연구참여 확약 시 **휴가 보장 일수, 휴게시간 등에 대해 협의**해야 하며,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업무량 및 휴일 등에 대해 참여연구자들이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
- 권익 보호 관련 제반 사항을 기관별 **‘학생연구자 지원규정’**에서 확인 가능하며, **기관 구성원들은 모두 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**하여야 함



학생연구자 안전보험

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 상관없이 학생연구자의 연구 수행 중 재해에 대한 보상 가능
- 보상 가능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기관 내 안전관리 부서에 문의 필요